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 기간: 2026. 7. 13. ~ 2026. 7. 31. (18일간)

2. 공고 대상자

연번	성명	생년월일	공고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주소	공고사유
1	원*나	2008. 7. 23.	2026. 7. 13.	2025. 8. 1. ~ 2026. 7. 31.	인천시 남동구 서판로 11 (만수동)	송달불능

3.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
- 1)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 - 2)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 -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 -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(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통장 확인란에 날인)
 -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동행(신분증 지참)
 - 3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(3.5cm x 4.5cm)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.
(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고자하는 경우는 사진 1장을 추가하여야 합니다.)
 - 4)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시에 집적회로(IC)칩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* 집적회로가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추가 수수료 없음)
- ※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※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※ 23. 1. 12.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에 따라,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29호 서식의 안내사항(주민등록지가 속한 시·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)과 관계없이 '가까운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'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4. 문의 전화 : 만수3동 행정복지센터 (☎032-453-5426, FAX. 032-453-5439)

2026년 7월 13일

만수3동장

